

전주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가단16837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전북신용보증재단

피 고 A

변론 종결 2016. 4. 19.

판결 선고 2016. 7.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78,649원 및 그 중 9,978,622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5. 7. 9.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978,649원 및 그 중 9,978,622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공동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6. 3.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 4.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0,45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8. 5.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고창신용협동조합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1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고창신용협동조합에 대출원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보증이행금액 및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에 든 미용, 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보증계약 체결일로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다. 피고가 2013. 11. 27. 이후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이에 고창신용협동조합이 2014. 8. 29.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4. 9. 17. 고창신용협동조합에 10,062,562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중 83,940원을 회수하여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이 9,978,622원이 남아있고, 27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978,649원(= 대위변제금 잔액 9,978,622원+ 확정손해금 27원) 및 그 중 9,978,62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9.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9.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의 청구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부분을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인